

재생에너지원의 개발,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

요약본

* 이 법은 「2008년 재생 에너지 법」으로 인용한다.

* 천연가스, 바이오매스, 태양에너지, 풍력에너지, 수력에너지, 지력에너지, 해양 에너지원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탐구 개발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여 에너지 수입을 줄이며 수입 에너지 연료에 대한 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

* section 4에서는 "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", "바이오매스 에너지원", "투자 위원회(BOI)", "열병합 시스템", "생성 공급", "전기유통", "유통시설"(DU), "생산 시설", "생산 에너지", "지열에너지 서비스 시스템", "지열자원", "그리드", "하이브리드 시스템", "수력전기 동력 시스템" 및 "수력전기 시스템", "비-동력 이용", "비-동력 이용", "해양 에너지 시스템", "재생 에너지원", "재생에너지 시스템(RE system)", "태양 에너지 시스템", "풍력 에너지 시스템"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.

*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관세제도를 만들어서 풍력, 태양력, 해양 자원, 강물을 이용한 수자원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관한 관세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.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ERC는 국립재생에너지 위원회와의 자문을 통해서 관세제도를 육성한다.

* 필리핀 에너지 시장 협회(PEMC)는 에너지부서의 감독 하에 재생 에너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재생 에너지원의 발생에 관한 재생 에너지 인증사항을 발행하도록 한다.

* TRANSCO 및 그 이해관계인이나 구매자/승계인 그리고 모든 DU는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의 전송 또는 유통 계약 계획에 필요한 연계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하고, 여기에는 전송 및 유통 시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

지 전력 공장의 연계시설 라인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.

* 전기 공급 지역에 전기를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, off-그리드 지역에서의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의 최소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.

* 재생에너지 생산을 정부가 필수적으로 1% 이상 분담하도록 한다.

* 모든 재생에너지 조사 개발, 이용 및 재생에너지의 운영은 기존의 환경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한다.

* 정식으로 등록한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자에게는 이 법에서 세금 등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정한다(Section 15에서 규정).

* 재생에너지를 영리화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 등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(Section 21에서 규정).

* 전국 재생에너지 위원회,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을 설립, DOE 부속 재생에너지 관리 부서(REMB) 가 창설

* 이 법 효력일로부터 6개월 내에, 에너지부서(DOE)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, 의회위원회 연합의 승인을 얻어 이법의 부속 규칙을 공포하고,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정하고 있다.